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83

발의연월일: 2021. 1. 27.

발 의 자:이양수·정희용·김은혜

안병길 · 주철현 · 정운천

추경호 · 권성동 · 이개호

권영세 · 이만희 · 김태호

김성원 · 서삼석 · 조수진

이헌승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, 선원교육,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,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,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.

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, 「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, 적용대상을 외국적어선 승선 우리국민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, 실질적으로 「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원양선사·선박을 제재하

기 위한 규정이 현행법에서는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「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동해역의 어업허가를 제한·정지하거나 출항·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제16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679호)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「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2제1항·제2항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먼허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원양어업허가 제한 등) ①	제7조(원양어업허가 제한 등) ①
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	
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	
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	
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	
선의 계류 또는 출항·입항을 제	
한할 수 있다.	
1 .~ 15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6. 「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
	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
	<u>률」 제11조의2제1항・제2항</u>
	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 제
	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